

국립대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지침) 마련

□ 개정배경

- 감사 처분 미이행 국립대학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감사처분 이행담보를 위해 기존 사립대학에 적용하는 행정제재 기준을 국립대학에 동일 적용하도록 지침 개정('16.4.1)

☞ 국립대학 감사처분 이행현황('11~'16년)

('17.2월 현재))

실시대학	처분건수	기 이행	미 이행	이행률
29	787	746	41	94.8%

※ (주요 미이행 사유) 소송(심판) 진행, 회수 분할 납부 등

□ 개정내용

- (개정지침) 「대학 감사결과 이행을 위한 행정제재 기준 운영지침」
- (개정내용) 적용범위 확대(사립대 적용 기준을 국립대에도 확대 적용)
 - (기존)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 (변경) 고등교육기관 전체
- (제재기준) 현행 사립대학과 동일한 제재 기준 적용 중

구분		세부 제재 기준
별점 부여	① 행정상 조치	<u>지적 건별 25점</u> * 행정 + 제정, 혼합조치인 경우 각각 점수부여 하고 높은 점수로 산정
	② 신분상 조치	대상별 <u>중징계 20점</u> , 경징계 10점, 경고 이하 5점
	③ 재정상 조치	<u>1억원당 3점</u> . 다만, 1억원 미만인 경우 3점
행정 제재	100점 이상	<u>정원 감축</u> (입학정원 5%)
	50점이상~100점미만	<u>모집정지</u> (입학정원 5%)
	30점이상~50점 미만	<u>정원 동결</u>
	30점 미만	<u>행정제재 예고</u> (제재 유보)
누적 가산율 적용		행정제재 산정 다음연도부터 <u>미이행 점수에 20%씩 누적 가산율을 적용</u> 하여 점수 산정

- (시행시기) 금년('17.1.~)부터 적용
 - 기존(~'16년) 감사 처분 후 미이행 대학도 동일 적용

□ 적용 방안

- (점수 산정 시점) 시행 후 처분 대학의 경우 처분 연도 **다음해부터 적용**
- (행정처분위원회 안건 상정) **30점 상회 대학**
- (제재 유보) 소송(심판) 진행이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으로 인해 행정절차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경우
- (점수 산정 제외) : 대상자 면직 처리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상 조치에 대해 **행정처분위 심의를 거쳐 점수 산정 제외**

□ 향후 계획

-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제출받아 **집중적 사후관리**(연 4회 이상)
- 미이행 대학 행정처분 실시(수시)
 - 이행결과 검토 후 제재 대상 대학 확정 및 처분위 심의요청
 - 행정처분위(연 6회) 심의 후 처분(모집정지, 정원감축 등) 결과 통보

안건 문의 : 감사관실 감사총괄담당관 담당자 : 이일준 (☎044-203-6859)

2012. 7. 1. 교육과학기술부(감사관실)

2014. 7. 1. 교육부(감사관실)

2016. 4. 1. 교육부(감사관실)

1. 목적

이 지침은 고등교육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따라 교육부의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과 감사원법 제32조 내지 제34조의2에 따라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대학에 대해 학생 정원감축, 모집정지 등의 행정제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육부 또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국립대학과 학교법인 및 그가 설치·경영하는 사립대학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국립대학”이란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를 말한다.

나.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다. “사립대학”이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대학(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및 「평생교육법」 제33조에 따라 설치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라. “행정상조치”는 개선, 시정, 통보 등을, “재정상조치”는 회수, 변상, 보전을, “신분상조치”는 중징계, 경징계, 경고, 주의를 말한다.

4. 행정제재 방법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별로 점수를 산정하고 행정제재 수준을 행정처분위원회의에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5. 점수산정 기준

가. 감사결과 처분에 대한 미이행 사항은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로 구분하고 미이행 사항별 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1) 행정상 조치는 건별 25점으로 산정한다. 다만, 행정상 조치에 재정적 시정내용이 포함된 경우 재정상 조치 기준과 행정상 조치 기준을 각각 적용한 점수 중 높은 점수로 산정한다.
- (2) 재정상 조치는 1억원당 3점으로 산정한다. 다만, 1억원 미만은 3점으로 하며 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한다.
- (3) 신분상 조치는 대상자별 중징계 20점, 경징계 10점, 경고 이하는 5점으로 한다.

나. 연도말 처분으로 감사처분 이행보고 기한이 다음연도에 해당될 경우 차차연도부터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한다.

6. 행정제재 수준

행정제재는 학생 정원동결, 모집정지, 정원감축 등으로 하고 점수별 행정제재 수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가. 30점 미만은 행정제재 예고(제재 유보)
- 나. 30점 이상 50점 미만은 정원동결
- 다. 50점 이상 100점 미만은 모집정지(입학정원 5%)
- 라. 100점 이상은 정원감축(입학정원 5%)

7. 누적 가산율 적용

감사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제재 점수를 산정한 다음연도부터 미이행 점수에 20%씩 누적 가산율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8. 제재 유보 등

가. 감사처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소송 종결 시까지 행정제재 점수산정을 유보할 수 있다.

나. 처분 이행을 위해 행정절차상 불가피하게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처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보할 수 있다.

다. 대상자 면직처리, 임의 감경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신분상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점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를 2회 이상 받았을 것, 단, 경징계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 2회 이상의 제재 중 1회 이상의 모집정지 또는 정원감축의 제재가, 중징계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 2회 이상의 제재 중 1회 이상의 정원감축의 제재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며, 감사결과 미이행에 따른 제재 횟수 및 중징계·경징계별 제재 횟수는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신분상 조치의 전체 건수 등을 고려하여 개별대학별로 정한다.

(2) 해당 신분상 조치 외 다른 모든 조치의 이행이 완료되었을 것
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사립대학도 제재대상에 포함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제재여부는 행정처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2012. 7. 1.>

이 지침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따라 행정제재 점수가 산정된 대학의 경우 “5. 점수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기준을 적용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부 칙 <2014. 7. 1.>

이 지침은 2014. 7.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1.>

이 지침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이 지침 시행 전 감사처분을 받은 대학의 경우에도 이 지침에 따른다.

